

「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9일 장문혁 의원이 발의하고, 2020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 목적 및 정의 (안 제1~2조)

나.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공개원칙규정(안 제3조)

다. 정기적·수시적 행정정보 공표사항 규정(안 제5조)

라. 정보공개수수료 비용부담(안 제6조)

마.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(안 제7~11조)

바. 정보공개 운영사항에 대한 공표(안 제12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
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
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취지가 있습니다.

○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안 제3조에서는 공공자산인 행정정보의 공개원칙규정

안 제5조에서는 정기적·수시적 행정정보 공표사항

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수수료 비용부담

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

안 제12조에서는 정보공개 운영사항에 대한 공표에 대해
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조례안 근거 상위법인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는

정보공개에 관한 자치법규 규정 형식을 “조례”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존중을 위하여

“지자체에 대한 법령정비 의무규정”도 함께 정해 놓고 있습니다.

이번 조례안은 1999년 제정되어 규칙으로 규정되어온

행정 정보공개 내용을(「평창군정보공개규칙」)

상위법 위임형식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취지입니다.

- 전국 243지자체 정보공개 자치법규 형식을 보면
19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,
30여개 지자체가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고, 여기에는 강원도 14개 시·군이
포함되어 있습니다.

- 개정은 아니지만 기존 규칙과 비교하여 운영 상 추가·변경된 사항은
괄호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{행정정보 공표 2개부문 추가(부채 및 부채 상환현황, 행정심판·지방세 심
의결과),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2분의 1에서 과반수로 변경,
운영상황에 대한 공표 추가}

- 「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」 탄생의 단초를 제공한
「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」가 청주시 의회 의원발의로 시작했듯이
집행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조례를
**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발의함은 군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한
고무적인 일이며, 견제기능의 기본적 사항이라 사료됩니다.**

- 조례안은
의회 입법고문으로부터 발의 타당성 및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았으며
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형식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
관련법령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적용범위)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

제6조(공공기관의 의무)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.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7조(비용 부담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,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,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「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